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3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제221613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 주민단체의 의견 반영 노력 의무화 (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3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2 신설)	6
다. 빈집정비사업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9

I.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제221613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1. 19.

다. 회 부 일 : 2026. 1.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제44조).

3. 검토의견

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 주민단체의 의견 반영 노력 의무화 (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③ ~ ⑧ (생략)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u>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제1항¹⁾에 따라 시장·군수등²⁾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3)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안 제4조제2항 후단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4)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현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안)의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는 빈집정비계획의 현실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시장·군수등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각 호 생략)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안 제4조제2항 후단은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보유한 주민단체가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는 입장이며, 법률 조문 간 용어 통일을 위하여 개정안의 “주민단체”를 현행법 제4조제2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⁵⁾임.

5)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략) <후단 신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수립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⑧ (개정안과 같음)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지사⁶⁾가 구축하는 빈집정보시스템⁷⁾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안 제15조의2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5조제1항⁸⁾에 따라 현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분산된 빈집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통해 빈집정보의 일관성·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5조제4항⁹⁾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17개 시·도와 위탁계약을 맺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 제15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적·표준적인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④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빈 건축물 정보시스템의 구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¹⁰⁾ 등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권한 관련 법안 현황 】

구분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2201865호)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제2203931호)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제2209283호)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제2216133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5213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제2216234호)
	주요내용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 타 기관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근거 마련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이 빈 건축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 중인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10) 현행법의 관리 대상인 빈집을 빈 건축물로 확대하고 빈 건축물의 지역·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법률을 통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내용임.

다. 빈집정비사업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생략)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u>국가, 시·도지사</u> ----- ----- ----- ----- ----- ----- -----.
③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③ <u>국가 또는 시·도지사</u>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안 제44조제2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¹¹⁾가 시행하는 빈집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구획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¹²⁾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도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구주택공사등¹³⁾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¹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도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
2. 토지구주택공사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각 호 생략)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토지구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구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구주택공사등”이라 한다)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개정, 2026. 2. 27. 시행]

제44조(보조 및 융자) ③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구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빈집 방치 증가 및 사업 지연 등 정비사업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개정안은 빈집정비사업 등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의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¹⁵⁾.

-
-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15) 참고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에서도 국가가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입법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u> 9. <u>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u> 10. <u>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u>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u>“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u> 가. <u>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u> 11) <u>「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u>	제9조(기금의 용도) ② <u>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 1. <u>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u> 가.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u> 2. <u>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용자</u> 가.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u> 3. <u>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용자</u> 다.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u>

다만, 법률 제21177호 개정(2025. 12. 2. 개정, 2026. 3. 3. 시행)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44조제4항이 신설된바,

현행법 제44조제4항과 안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문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44조제4항과 안 제44조제2항·제3항 비교 】

현행	개정안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국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u>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u>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u>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u>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도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용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의처

02)6788-5578